

2017.2.2.(목) ~
2.10.(금) / 9일 간

제2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목 차

1.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4
3. 장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4.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5.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6. 장성군 군민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7
7. 장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8

심사결과

의안명	심사결과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ㄴ
장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ㄴ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장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원안가결

주요내용

1.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7. 1. 25.

▪ 발 의 자 : 김희식 의원 외 7

▪ 제안이유

- 군의회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 또한,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외 여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2015. 1. 6. 개정)에 맞도록 지급 범위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안 제6조)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

- 의원 여비 지급기준 조정(안 별표 1, 별표 2)

- 국내·외 여비의 지급범위를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라 공무원 여비 조정 금액에 맞춰 변경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및 별표 4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7. 2. 10.)

2.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 성 군 수
-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육성·지원하고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예산지원(안 제5조)
 - 군수는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대상(안 제6조)
 - 지역 문화예술(전통문화 포함)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행사 등
 - 지역 문화예술교육 및 육성사업
 - 전통문화 발굴·전승·보존·복원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 대상사업 심의(안 제9조)
 - 지원 대상사업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 법적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7. 2. 10.)

3. 장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11. 16.

▪ 제 출 자 : 장 성 군 수

▪ 제안이유

- 「건축법」(법률 제13782호)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규제 개혁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구성 변경 (8장 37개 조항 ▶ 10장 53개 조항으로 변경)
- 제4조 「건축법」 적용의 완화를 기준을 구체화(법 위임)
 - 녹색건축물과 주민이용시설 등의 건축기준완화 확대 적용
- 제8조~제15조 건축위원회 구성 기준 변경(법 개정)
 - 건축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 (9~15명 이내에서 25인 ~ 150인 이하)
 -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기준 마련
- 제26조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자체 확대)
 - 공공용 위생관련 건축물, 공익사업 편입 임시 주택 등
- 제27조 감리비용 지급기준 구체화(법 위임)
 -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의 비용 지급 기준 마련
- 제32조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준 마련(법 위임)
- 제51조 이행 강제금 감면 기준 마련(법 위임)

▪ 법적근거 : 「건축법」(법률 제13782호) 및 「녹색건축물지원법」(법률 제14122호)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7. 2. 10.)

4.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11. 16.

▪ 제 출 자 : 장 성 군 수

■ 제안이유

-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3474호)이 제정되어 2016. 8.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법령(주택법)을 변경하고, 조례 위임사항과 규제개혁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함.

■ 주요내용

- 약칭 조문 변경(제1조 및 제2조)
- 조례 구성 변경 (1장 22개 조항 ▶ 6장 43개 조항으로 변경)
- 제1조 ~ 제3조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목적 및 적용범위 제시
- 제8조 공공시설 보수 보조율 상향 (50% ▶ 80%)
- 제16조 안전점검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범위 상향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하)
- 제32조 ~ 제39조 법령에 근거한 공동주택 감사요청 근거 및 기준마련
- 기타 신청절차 및 기준의 명확화

■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4093호)

■ 의결결과 : 수정가결(제2차 본회의 / 2017. 2. 10.)

■ 수 정 안 : 붙임 1

5.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11. 16.

■ 제 출 자 : 장 성 군 수

■ 제안이유

- 법제처의 규제 개선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에 위배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하여 규정한 사업자 등에 부담을 주는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임금청구확인서 제출 및 작성 의무조항 삭제(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95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7. 2. 10.)

6. 장성군 군민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16. 11. 16.

■ 제출자 : 장 성 군 수

■ 제안이유

- 군민에게 건강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지역주민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안 제4조)
 -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프로그램 지원
 - 경로당 및 시설이용 군민 건강관리 및 교육
 -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프로그램 공유와 지원

- 건강 및 보건 관련 각종 기념행사 개최 및 지원
- 강사의 위촉(안 제6조)
 -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 그 밖의 지원(안 제8조)
 -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및 차량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법적근거 : 「국민건강 증진법」 및 「지역보건법」
- 의결결과 : 수정가결(제2차 본회의 / 2017. 2. 10.)
- 수 정 안 : 붙임 2

7. 장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발의일자 : 2017. 1. 24.
- 제 출 자 : 장 성 군 수
- 제안이유
 -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법정 계획으로,
 - 도시의 쇠퇴정도를 진단하고 분석을 통하여 잠재력과 성장요인을 도출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 주민공동체 활성화로 역사·문화 생태환경 재생을 통한 활력 있

는 장성군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장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에 대하여
-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장
성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장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개요

- 1) 공간적 범위 : 장성군 도시지역 7개 읍면
(장성읍, 진원면, 남면, 삼계면, 황룡면, 북이면, 북하면)
- 2) 면적 : 10.8km²(주거8.0km², 상업0.7km², 공업2.1km²)
- 3)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5년, 목표년도 2025년
- 4) 내용적 범위
 -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 도시재생 비전 및 전략 등 기본구상 설정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우선순위 선정

나. 쇠퇴 진단 및 분석 결과

- 1) 현황분석 및 진단 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산출식
인구 사회	인구변화	인구변화율	$(\text{기준년도 총인구수} - \text{비교년도 총인구수}) / \text{비교연도총인구수} \times 100$
	인구구조	노령화지수	$(65\text{세 이상 인구수} / 15\text{세 미만 인구수}) \times 100$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text{기초생활수급자수} / \text{총인구수}) \times 1000$
		노년부양비율	$65\text{세 이상 인구수} / (15\text{세 이상} \sim 65\text{세 미만 인구수}) \times 100$
		경제활동인구비율	$15\text{세 이상} \sim 65\text{세 미만 인구수}$
산업 경제	산업체변화	총사업체수 증감율	$(\text{기준연도총사업체수} - \text{비교연도총사업체수}) / \text{비교연도 총사업체수} \times 100$
	산업구조	사업체당 종사자 비율	$\text{총종사자수} / \text{총사업체수}$
		제조업 종사자 비율	$(\text{제조업 종사자수} / \text{전 산업 종사자수}) \times 100$
		도소매업종사자 비율	$(\text{도소매업종사자수} / \text{총인구수}) \times 1000$
		지가변동율	지가변동율
물리 환경	노후도	노후주택비율	$(20\text{년 이상 경과된 주택수} / \text{총 주택수}) \times 100$
	주택	소형주택가구비율	$(\text{전용면적} 19\text{평 이하 가구수} / \text{전체주택수}) \times 100$
		신규주택비율	$(\text{최근} 5\text{년안에 신축된 주택수} / \text{전체주택수}) \times 100$

2) 정량적 쇠퇴 평가등급 및 배점

쇠퇴진단							
평가항목(정량적)			평가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구사회	인구변화	인구변화율	1점	2점	3점	4점	5점
	인구구조	노령화지수	1점	2점	3점	4점	5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1점	2점	3점	4점	5점
		노년부양비율	1점	2점	3점	4점	5점
		경제활동인구비율	1점	2점	3점	4점	5점
산업경제	산업체변화	총사업체수 증감율	1점	2점	3점	4점	5점
	산업구조	사업체당 종사자 비율	1점	2점	3점	4점	5점
		제조업 종사자 비율	1점	2점	3점	4점	5점
		도소매업종사자 비율	1점	2점	3점	4점	5점
		지가변동율	1점	2점	3점	4점	5점
물리환경	노후도	노후주택비율	1점	2점	3점	4점	5점
	주택	소형주택가구비율	1점	2점	3점	4점	5점
		신규주택비율	1점	2점	3점	4점	5점

3) 정성적 잠재력 평가기준 및 배점

상위·관련계획 및 행·재정 지원여부 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점수배분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		정성적 평가	5점	3점	1점
기존재생사업 추진 및 정책반영여부	기 추진 사업	정성적 평가	5점	3점	1점
	정책반영여부	반영여부	5점	3점	1점

지역잠재력 및 추진역량 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점수배분		
도시재생 관련조직	조직개수	정성적 평가	5점	3점	1점
	관련교육 및 프로그램 참가 횟수	정성적 평가	5점	3점	1점
잠재자원 분포개수	역사자원	개수	5점	3점	1점
	문화자원	개수	5점	3점	1점
	관광자원	개수	5점	3점	1점

4) 구역설정의 원칙

- 유사한 쇠퇴도, 근접 생활권 지역
- 간선도로 · 지형, 행정리 단위로 구분

5) 우선순위 선정기준

- 장성군 도시재생활성화 예비지역내 쇠퇴지역 집계구 지표를 표준화하여 등급에 따라 점수를 배분함
- 대분류 항목을 쇠퇴진단/상위 · 관련계획 및 행 · 제정 지원여부/지역잠재력 및 추진역량으로 구분하고 중분류 항목으로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 기존재생사업추진 및 정책반영여부, 부문별 쇠퇴진단 등 7개 항목을 제시하여 위 평가 기준 및 항목을 토대로 최종적인 우선순위를 도출

다. 도시재생 기본구상

1) 재생권역별 기본구상

- 장성군 생활권 분석, 도시자선의 분포 및 특성 분석, 도시재생 목표 및 방향 정립 등을 종합하여 설정

구분	목표	기본방향	재생전략
중부생권역	활력 넘치는 도심공간 조성 및 중심지 기능 강화	-군 전체 중심성 강화 및 향릉 5일시장 경쟁력 제고 -문화와 결합한 지역상권 활성화(문화장터화)	-복원, 보존된 역사유적, 유물 이용·보호 -부족한 기반확충 및 경관개선 -근린상가 노후 주거지 재생방안 마련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창업
북부생권역	장성 관광거점 육성 및 정주공간 특성화	-북이면 소재지 중심성 강화를 통한 정주공간의 특성화 -양호한 경관자원, 편리한 교통 등 권역 잠재력 활용 도시민 유치 추진	-장성호 주변 관광지 활성화 -수려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전원주택지 개발 -농주특산물 가공산업화 및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서부생권역	서부권 기능 중심지 강화 및 정주공간 특성화	-상무대 방문객 연계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계자 정주기반 개선회 -농어촌뉴타운의 성공적 조성을 통한 귀농인구확충 및 지역활력증진	-상무대 배후도시로 숙박, 상업기능 강화 -기존시가지 재정비 및 경관 개선 -사과, 장미공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남부생권역	대도시 배후 도시민 유치 주택단지 조성 및 체험관광 중심지 육성	-대도시권 및 첨단산단, 하남산단 배후 전원도시로 -도농교류의 중심지로 집중 육성	-단감 등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가공상품 개발 -첨단지구를 연계한 둘레길 조성 -주말농장 등 농교류프로그램

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세부기준 평가(읍·면단위)

-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부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세부기준을 2개 이상 충족하는 지역은 장성읍, 황룡면, 북이면, 북하면, 삼계면 5개 읍면이 해당됨

구분	중부재생권역		북부재생권역		서부 재생권역	남부재생권역	
	장성읍	황룡면	북이면	북하면	삼계면	남면	진원면
1. 인구사회	○	○	○	○	○	○	○
과거대비 인구변화(%) (1980~2010년)	-51.96	-63.64	-67.17	-64.39	-27.23	-66.58	-61.26
최근 인구변화(년) (2008~2013년)	2	4	5	5	1	4	0
2. 산업경제	X	X	○	○	○	X	X
과거대비 사업체변화(%) (2000~2012년)	-0.38	1.72	-11.22	-10.05	-8.40	9.88	7.86
최근사업체 변화(년) (2008~2012년)	0	2	3	2	1	1	1
3. 물리환경	○	○	○	○	○	X	X
노후 건축물 비율(%)	68.42	56.99	62.56	54.72	58.85	47.49	44.74
4. 대상지역	○	○	○	○	○	X	X

(자료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세부기준 평가(법정리 단위)

-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부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세부기준을 3개 이상 모두 충족하는 지역은 없었으며, 2개 이상 충족하는 지역은 장성읍, 황룡면, 북이면 3개 읍면이 해당됨

구분	중부재생권역		북부재생권역		서부 재생권역
	장성읍	황룡면	북이면	북하면	삼계면
1. 인구사회	○	○	○	○	○
과거대비 인구변화(%) (1980~2010년)	-12.4	-19.9	-24.0	-10.06	-22.05
최근 인구변화(년) (2008~2013년)	3	5	5	2	2
2. 산업경제	X	○	X	X	X
과거대비 사업체변화(%) (2000~2012년)	0.0	-94.7	0.0	0.0	0.0
최근사업체 변화(년) (2008~2012년)	0	2	0	0	1
3. 물리환경	○	X	○	X	X
노후 건축물 비율(%)	57.0	40.7	51.1	31.0	41.2
4. 대상지역	○	○	○	X	X

(자료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우선순위 선정

- 우선순위 평가기준에 따라 1순위, 장성읍 2순위 황룡면, 3순위 북이면으로 선정됨

구분	장성읍지구 (대창/삼가지구)	황룡지구	북이지구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	5	3	1
기존재생사업 추진 및 정책반영여부 (사업추진 여부+ 정책반영여부=10점)	2	2	2
인구사회 (읍·면+ 행정리=10점)	6	8	8
산업경제 (읍·면+ 행정리=10점)	6	8	6
물리환경 (읍·면+ 행정리=10점)	6	6	8
도시재생관련조직 (조직수+ 관련교육 참가횟수=10점)	6	2	2
지역잠재자원 (역사자원+ 문화자원+ 관광 자원=15점)	15	15	15
원점수 (70점 만점)	46	44	42
환산점수 (100점 만점 환산)	66	63	60
	1순위	2순위	3순위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출

- 총 3개소 활성화지역 선정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지정기준을 2개이상 충족하고 있는 중부 재생권역(장성읍, 황룡면), 북부재생권역(북이면)의 도시지역 내에서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검토
- 이중에서 장성군의 중심기능이 가장 높고 건물 밀집도, 노후도가 가장 심각한 장성읍 대창지구, 장성읍 삼가지구, 황룡지구, 북이지구 지역을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

5) 활성화지역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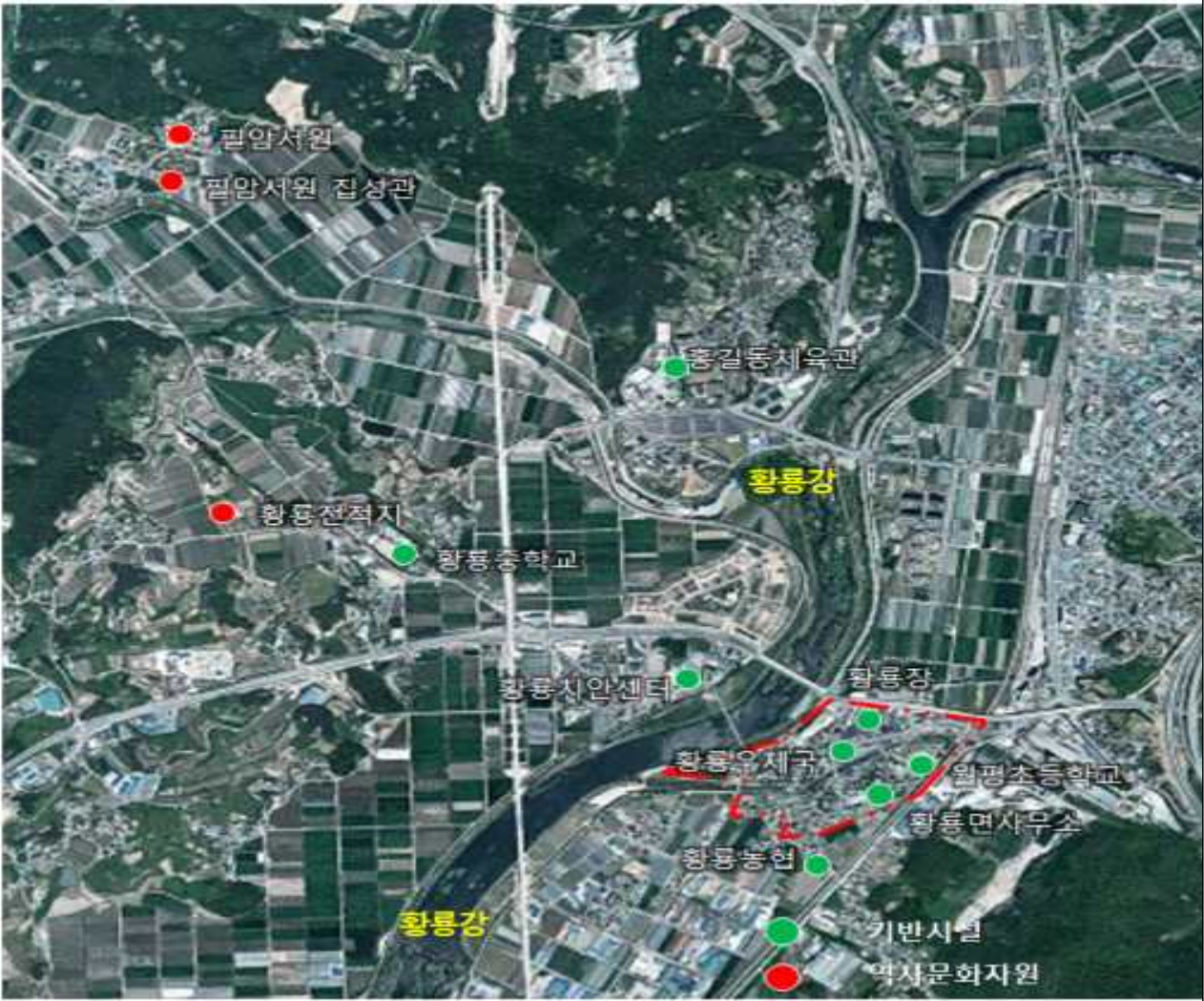
① 장성읍지구(대창지구/삼가지구) 활성화지역(안)



대창지구			
비전	산업+문화+사람이 어우러진 활력 넘치는 장성		
목표	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사회·경제 활력 회복		
도시재생 전략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상권 활성화	공공거점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주민자생력 배양 및 공동체 활성화

삼가지구			
비전	산업+문화+사람이 어우러진 활력 넘치는 장성		
목표	정주기반 및 정주환경개선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		
도시재생 전략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정주환경 개선	자생력 배양 공동체 활성화

② 황룡지구 활성화지역(안)

			
비전	상권이 살아나고 삶이 풍요로운 황룡면		
목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우수자원의 연계로 지역경제 재생		
도시재생 전략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자원 활용	중심지 기능 확충

② 북이지구 활성화지역(안)



비전	북부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북이면		
목표	중심기능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		
도시재생 전략	면소재지 중심성 강화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주민복지 및 커뮤니티 활성화

마. 도시재생 추진체계 운영 및 관리운영방안

- 1)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2)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3)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 구축
- 4)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5)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바. 성과관리방안

- 1) 성과관리 평가지표 설정
- 2) 모니터링 및 평가·환류체계 구축

- 법적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7. 2. 10.)

【붙임1】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안 제 5조에서 “제 8호”를 삭제하고 제 8조 제 4항 “보조금은 총사업비 80%”를 “보조금은 총사업비 60%”로 한다.

수정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대상 사업)(생 략) 1.2.3.4.5.6.7.(생 략) 8. 그 밖에 주민 공용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제5조(지원대상 사업)(생 략) 1.2.3.4.5.6.7.(생 략) 8. 삭제
제8조(지원결정 및 정산) ①,②,③ (생 략) ④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u>80%</u> 범위 안에서----- ----- -----.	제8조(지원결정 및 정산) ①,②,③ (생 략) ④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u>60%</u> 범위 안에서----- ----- -----.

【붙임2】

장성군 군민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장성군 군민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장성군 군민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민”이라 함은 장성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말한다.
2. “건강증진사업”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와 관련하여 장성군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절주, 비만, 영양개선, 신체활동과 구강건강, 금연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

나. 모자보건, 치매, 정신보건, 장애인재활사업, 아토피·천식, 암관리, 한의약, 방문건강관리 등 각종 보건사업

다. 그 밖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사무를 포함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여, 군민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내용) 군민건강증진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3. 경로당 및 시설이용 군민 건강관리 및 교육
4.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프로그램 공유
5. 삭제
5. 그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

제5조(건강증진사업 등 실시)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건강증진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실시할 수 있다.

② 건강증진사업 중 보건관련 행사 유공자, 금연성공자 등 사업 확산을 위해 실시한 행사나 대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6조(강사의 위촉 등) ①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해당 분야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군수는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그 밖의 지원)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삭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건강증진사업”이란 <u>장성군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에서 군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u> 가. <u>절주, 비만, 영양, 신체활동과 구강, 금연서비스 등</u> 에 관한 <u>사항</u> 나.·다. (생 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건강증진사업”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와 관련하여 <u>장성군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u> 가. ----- <u>영양개선, 신체활동과 구강건강-----</u> ----- <u>사업</u> 나.·다. (현행과 같음)
제3조(군수의 책무) <u>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한다.</u>	제3조(군수의 책무) ----- ----- <u>군민-----</u> ----- ----- <u>장·단기 정책을 수립하여, 군민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u>
제4조(사업내용) <u>군민건강증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u> 1.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프로그램 <u>지원</u> 2.·3. (생 략)	제4조(사업내용) ----- ----- -. 1. ----- -- <u>운영</u> 2.·3. (현행과 같음)

4.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프로그램 공유와 지원

5. 건강 및 보건 관련 각종 기념
행사 개최 및 지원

6. 그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 지원

제5조(건강증진사업 실시)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건강증진사업 중 보건관련 행사 유공자, 금연성공자 등 사업확산을 위해 실시한 행사나 대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6조(강사의 위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2. (생략)

3. 그 밖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신설>

4. -----
----- 공유

<삭제>

5. 그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

제5조(건강증진사업 등 실시)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실시--

② -----

-----표창---

제6조(강사의 위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학식-----

③ 군수는 위촉된 강사에게 예

<u>제7조(수당) 군수는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u> <u>제8조(그 밖의 지원) ① 군수는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②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및 차량 등을 제공할 수 있다.</u> <u>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u> <u>제7조(그 밖의 지원)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u> <u><삭 제></u> <u>제8조 (현행 제9조와 같음)</u>
---	---